

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,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, 자격 인정 및 내과분과 전문 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“내과분과전문의”라 함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,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.

제 3 조 (의의)

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은 해당 분과의 내과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내과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.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.

제 4 조 (분과)

대한내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9개 내과분과 전문 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.

1. 소화기내과 분과
2. 순환기내과 분과
3. 호흡기내과 분과
4. 내분비-대사내과 분과
5. 신장내과 분과
6. 혈액종양내과 분과
7. 감염내과 분과
8. 알레르기내과 분과
9. 류마티스내과 분과

제 5 조 (조직)

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.

1.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
 - 1) 관리위원회 위원장은(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) 분과전문의 관리이사가 되고 9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된다.
 - 2) 위원 중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선출한다.
 - 3)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.
 - 4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.
2. 내과분과위원회
 - 1) 관리위원회 산하에 제4조에 규정한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.
 - 2) 각 분과위원회에는 관리위원장이 추천, 대한내과학회 이사장(이하 이사장이라 한다)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한다.

- 3)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추천, 관리위원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.
- 4)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수련)

- 1.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내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.
- 2.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.
단, 소화기분과의 수련기간은 2년으로 한다(전공의 수련 3년제에 한함).
- 3.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4. 수련교육 목적으로 전임의를 파견할 경우 기간과 수련장소를 명기하여 1개월 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전임의 파견 대상병원이 해당 분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해외 파견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인정하며,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 - 1) 해외 수련병원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
 - 2) 내과전공의 수련병원 여부
 - 3) 해당 분과 교육지도자 유무
 - 4) 적절한 시설 및 장비 구비: 각 분과별 수련병원 지정기준 충족
- 5. 전임의의 정원, 수련내용과 과정, 수련규칙 및 기록,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별로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조 (수련병원)

- 1.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전문 과목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, 기타 인적,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2.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내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.
- 3.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해당 분과별로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조 (자격인정)

- 1. 자격인정 방법
 - 1)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각 해당 분과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.
 - 2) 내과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와 갱신료를 징수한다. 인정료와 갱신료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인정을 무효로 한다.
 - 3)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2. 자격인정 기준
 - 1)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본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갖는 자
 - 2) 대한내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단, 소화기분과는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(전공의 수련 3년제에 한함. 2년차 이상의 수련 기간은 실무종사 경력으로 인정함.)

- 3) 상기 제 1, 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.
- 4) 기타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 9 조 (시험)

1.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은 매 1년마다 시행한다.
2.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방법,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0 조 (자격인정의 유효기간)

1.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, 월,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
2.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1 조 (부칙)

1. 본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제6조 제3항의 정규수련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.
3. 개정된 제5조 1항의 1), 2항의 2)와 3), 그리고 기구표는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5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06년 11월 2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10년 3월 10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
9. 본 규정은 2010년 7월 13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
10. 본 규정은 2014년 8월 21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
11.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
12. 본 규정은 2020년 2월 27일 개정되어 시행한다.